



## < 9월 주요 상담사례 >

### ○ (미술) 유명한 화풍을 모방한 그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문자(어문), 색(미술) 등으로 나타낸 것이 '표현'이며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친다.
- 즉, 사상·이론·감정 및 기술·방법 등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가 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저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에서 여러 가지 표현 형태를 가진 수많은 창작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문,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질의의, 화풍이나 기법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화풍을 따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화풍이나 기법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99가합9377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시스템(챗봇)에 가장 많이 묻는 질의 >

순위	질의
1	저작권 등록 문의
2	저작권법 상담사례
3	등록 절차
4	저작권 (Copyright)
5	저작권(이용 일반 및 제한)
6	등록 일반
7	신규 권리등록
8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 신청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9	저작물 조회
10	태극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국가유산진흥원, 경복궁 수문장 본문체 L' 글꼴로 작성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5년 9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